

# **In brief**

##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 **IASB 의 IFRS 2 '주식기준보상' 개정 발표**

21 June 2016

#### *Issue*

2016년 6월 20일 IASB는 IFRS 2 '주식기준보상'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한 세 가지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순액정산 조건을 포함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 *Impact*

개정사항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기준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주식결제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고, IFRS 2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종업원의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한 납세의무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경우 전체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 *Insight*

##### **현금결제형 보상의 측정**

IFRS 2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기준은 IFRS 13에 따른 공정가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현금결제형에 대한 공정가치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개정으로 인하여 현금결제형 보상의 공정가치도 주식결제형 보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시장성과 조건과 비가득조건은 공정가치에 반영하고 비시장성과 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상의 개수 추정에 반영된다.

이러한 변경은 보상이 비시장조건에 의해 가득되거나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에는 현금결제형 보상의 공정가치가 IFRS 13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비시장조건 또는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비시장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은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현금결제형 보상의 조건변경**

IFRS 2는 주식결제형 보상에 현금 선택권을 추가하는 조건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금결제형 보상을 주식결제형 보상으로 변경하는데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대한 회계처리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현금결제형으로의 조건변경은 즉시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고 주식결제형 보상에 가산된 증분가치는 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가치 감소는 무시한다.

개정 기준은 현금결제형 보상의 가치와 분류의 변경을 동반하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특히 변경을 적용하는 순서를 명확히 하여 분류 변경 이전에 가치 변경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금결제형 보상은 재측정하여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후 재측정된 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 순액정산 조건 보상

세법에서 회사로 하여금 종업원이 받은 주식기준보상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동 보상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당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에 따라 IFRS 2의 결론도출근거에 추가된 문단에서는 IFRS 2는 그러한 보상을 세금납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현금결제형 보상과 종업원에게 발행한 원천징수 해당액을 차감한 주식에 대한 주식결제형 보상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개정 기준은 전체를 주식결제형 보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예외를 추가하였으며, 따라서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지급액은 주식결제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한다. 예외사항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에 납부한 현금지급액은 주식기준보상으로 인식한 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현금유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한 기업은 개정내용의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성과보상조건을 포함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납세의무 관련 순액 정산 조건을 포함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주식결제형 보상으로 조건변경된 현금결제형 보상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경과규정은 최초 적용일 현재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이나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조건변경에 대해 이전기간의 재작성 없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액정산조건으로 인하여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될 때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사항은 거래 발생 시점 기준으로의 추정이 가능하고 모든 개정사항에 대한 소급효과 산출이 가능하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